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622020022120 / 2025-12-23 18:33:38

2026년 사업집행 계획서

사 업 명	2026년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주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산림조합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사업집행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 사업기간 : 2026. 01 ~ 2026. 12.

❍ 사업내용 :

- 통합사업 실행, 설계
- 통합사업 실행(임도신설)
- 운영협의회 운영 및 홍보활동

□ 교부받고자 하는 대행사업금액 : 758,282천원

□ 자체부담액 :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758,282천원

(국고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4분기	사업준비, 교부금 승인, 산주동의	
2/4분기	산림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산주동의	
3/4분기	산림사업 시공	
4/4분기	직접사업 완공 및 정산, 회계검사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 **보조사업의 효과**

❍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증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주중심의 성공적인 산림경영 모델제시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합 계		758,282	
노 무 비		145,707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소 계**	598,838	
	1.**사업관리경비**(1)	26,015	
	2.**외주사업비**(2)	18,380	
	3.직접사업비(3)	554,443	
일반관리비		13,737	(노무비+사업관리비) ×요율(%)

[붙임]예산편성 및 내역참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해	**당**	**없**	음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붙임1]

○예산편성 및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사업관리비				**185,459**	
1.1. 인건비(A)				**145,707**	
-직접인건비(경영팀장)	인	1	75,443	75,443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2025년 기준)
-직접인건비(사업담당)	인	1	49,627	49,627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2025년 기준)
-간접인건비		직노×요율	16.50%	20,637	토목공사제경비요율
1.2. 사업관리경비(B)				**26,015**	
(1) 여비교통비				3,200	
- 현장조사여비(팀장)	일	120	10	1,200	1개월 x 15일(임차차량) x 8월 (선도교육관외출장포함)
- 현장조사여비(담당)	일	200	10	2,000	1개월 x 20일(임차차량) x 10월
(2) 차량비				12,415	
-렌트비	월	12	753	9,036	
-유류대	월	12	40L*4회/월	3,379	휘발유기준금액 1760원(변동단가적용)
(3) 소모품비	식	1	500	500	복사용지 등
(4) 교육훈련비	식	1	200	200	
(5) 도서인쇄비				200	
-각종설명회자료	식	1	100	100	
-도서구매 및 제본비	식	1	100	100	
(6) 수선비	식	1	3,500	3,500	
(7) 회의비				4,300	
-운영협의회 등	회	3	1,000	3,000	
-선진지견학	회	1	500	500	
-전문가 자문료	회	4	200	800	
(8) 홍보비	식	1	1,500	1,500	선도단지 임도입간판 설치
(8) 기타				200	
-통신비	식	1	100	100	
-증명서 발급비	식	1	100	100	
1.3. 일반관리비(C)		**(A + B)**	**8.00%**	**13,737**	토목공사제경비요율
1.4. 부가가치세(D)		(A+B+C)	0%	-	부가세 면세
2. 외주 사업비				**18,380**	
2.1. 세부설계용역비	식	1	5,500	5,500	산림사업표준품셈,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참고
2.2. 전문가위탁비	식	1	12,100	12,100	사업비정산 및 회계감사
2.3. 홈페이지 유지보수	식	1	780	780	선도단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3. 직접사업비				**554,443**	
3.1. 기반시설조성사업	식	1	554,443	554,443	간선임도 2.0km
통합사업비 계				**758,282**	

첨 부 : 산출근거 1부.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직접사업비 및 외주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1. 직접사업비 내역

공종	사업구역	사업량(km/ha)	금액	비고
임도사업	의성 점곡	2.00	554,443	간선임도사업
		-	-	
			-	
계			554,443	

2. 외주사업비 내역

공종	비목	사업량(km/ha)	금액	비고
임도사업	설계비	2.0	5,500	간선임도 설계변경비 (사업금액의 1%이내)
			-	
			-	
			-	
			-	
계			5,500	

첨 부 : 1. 임도사업 산출근거 1부.
2. 조림사업 산출근거 1부.
3. 풀베기사업 산출근거 1부.
4. 산불예방숲가꾸기 산출근거 1부 끝.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임도사업 산출근거

단위 : km

1. 임도사업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명	사업량(km)	단가	금액	비고
임도사업	2.00	-	554,443,000	동변리 산40-2외
계			554,443,000	

2. 임도사업 설계비 산출

비목	사업량 (km)	단가	금액	비고
간선임도 실시설계비	2.00	-	31,443,300	**2025년 설계용역 발주**
간선임도 설계변경비	2.00	-	5,500,000	**사업금액 1%이내**
계			36,943,300	

첨 부 : 1. 실시설계 산출기준 1부.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

1. 설계비 산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예정공사비 : 총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 619,200,000 ÷ 1.1 = 562,000,000

○ 요율산출

구 분	업무별	공사비		비 고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건설부문	실시설계	6.16	6.16	

※직선보간법 :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 **6.16**

Y : 당해공사비요율 x : 당해금액

$y1$: 작은금액요율 x1 : 큰금액

$y2$: 큰금액요율 x2 : 작은금액

○ 적용요율 = 6.16%

○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의 10%의 범위에 대한 증감 6.16% × 0% = 0.00%

○ 요율 조정에 의한 적용요율 = 6.16% + 0.00% = **6.16%**

○ 제13조1항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요율의 1.35배 적용

○ 설계용역비

562,000,000 × 6.16% × = **34,619,200 원**

34,619,200 원

2.추가업무비용 **- 원**

가) 각종측량비 **- 원**

나) 기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 항목에 있는 추가업무 **- 원**

3. 당해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1+2) 34,619,200 원

≒ **34,610,000 원**

4. 손해배상공제료 (1+2) **327,000 원**

1) 1단계 공제료 용역비 * 0.816% 282,418 원

2) 2단계 공제료 용역비 * 0.131% 45,339 원

5. 총용역비 **34,937,000 원**

실시설계용역비 34,610,000 원

손해배상공제료 327,000 원

소 계 **34,937,000 원**

부가가치세 원

합 계 **34,937,000 원**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202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5.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기타경비] (재+노)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4.3	14.3	14.3	5.8	5.5	5.8
	7~12개월 (365일)	14.5	14.5	14.5	6.0	5.8	6.0
	13~36개월 (1095일)	14.6	14.6	14.6	6.3	6.0	6.3
	36개월 초과 (1096일)	15.0	15.0	15.0	6.8	6.5	6.8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4.0	14.0	14.0	6.2	6.0	6.2
	7~12개월 (365일)	14.2	14.2	14.2	6.4	6.2	6.4
	13~36개월 (1095일)	14.3	14.3	14.3	6.7	6.4	6.7
	36개월 초과 (1096일)	14.7	14.7	14.7	7.2	6.9	7.2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4	13.4	13.4	6.5	6.2	6.5
	7~12개월 (365일)	13.5	13.5	13.5	6.7	6.5	6.7
	13~36개월 (1095일)	13.6	13.6	13.6	6.9	6.7	6.9
	36개월 초과 (1096일)	14.1	14.1	14.1	7.5	7.2	7.5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3.3	13.3	13.3	6.4	6.1	6.4
	7~12개월 (365일)	13.4	13.4	13.4	6.6	6.3	6.6
	13~36개월 (1095일)	13.5	13.5	13.5	6.8	6.5	6.8
	36개월 초과 (1096일)	14.0	14.0	14.0	7.3	7.1	7.3

공사규모 (추정가격)	[일반관리비] (재+노+경)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공사	[이윤] (노+경+일) x 율
5억 미만	6.0	6.0	15.0
5억 - 30억 미만		5.5	
30억 - 50억 미만		5.0	
50억 - 100억 미만	5.5		12.0
100억 - 300억 미만		4.5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1000억 이상	4.5		9.0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 x 율

종합건설업 구분	요율	전문건설업 구분	요율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0.68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 외	0.10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	
5억 ~ 50억 미만	건축공사	2.28	4,325
	토목공사	2.53	3,300
	중건설공사	3.05	2,975
	특수건설공사	1.59	2,4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건축공사	2.37	
	토목공사	2.60	
	중건설공사	3.11	
	특수건설공사	1.64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건축공사	2.64	
	토목공사	2.73	
	중건설공사	3.39	
	특수건설공사	1.78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7등급 미만	1.01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95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율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0.9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항만	0.8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0.8
조경	조경	0.3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50억 미만	0.081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70억 미만	[직공비x0.0141%]x공기(년)
70억 이상 - 120억 미만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500억 이상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 건설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